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740 발의연월일 : 2024. 10. 17.

발 의 자: 박성훈·김위상·박충권

김성원 · 이상휘 · 고동진

김기현 • 이인선 • 서지영

김대식 · 정연욱 · 김종양

임이자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되,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2024년 수출 및 기업실적 개선을 감안하여 투자여력이 제한된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제2호"를 "제2호 또는 제3호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하고, 같은 호나목 중 "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"를 "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"로 한다.

가. 기본공제 금액

- 1)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: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 (중견기업은 100분의 7, 중소기업은 100분의 12)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
- 가)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: 100분의 6(중견기업은 100분의 10, 중소기업은 100분의 18)에 상당하는 금액
- 나)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: 제2호가목2)에 따른 금액
- 2)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: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

한 금액의 100분의 1(중견기업은 100분의 7, 중소기업은 100분의 12)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

- 가)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: 100분의 3(중견기업은 100분의 8, 중소기업은 100분의 14)에 상당하는 금액
- 나)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: 제2호가목2)에 따른 금액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아 혂 개 정 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 ① --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 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 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----- 제2호 또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 는 제3호 ----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 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 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 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. 다만, 2023년 12 -----. <단서 삭제> 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 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 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 한다. 1. • 2. (생략)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3.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. 기본공제 금액: 2023년 12 가. 기본공제 금액 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 1) 2023년 12월 31일이 속 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 하는 과세연도와 2024년

의 3(중견기업은 100분의

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

- 7, 중소기업은 100분의 12) 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 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
- 1)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: 100분의 6
 (중견기업은 100분의 10, 중소기업은 100분의 18)
 에 상당하는 금액
- 2)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 설에 투자하는 경우: 제2 호가목2)에 따른 금액
- 연도: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 (중견기업은 100분의 7, 중소기업은 100분의 12)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
- 가)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: 100분의 6(중견기업은 100분의 10, 중소기업은 100분의18)에 상당하는 금액
- <u>너)</u>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 설에 투자하는 경우: 제 2호가목2)에 따른 금액
- 2) 2025년 12월 31일이 속 하는 과세연도: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(중견기업은 10 0분의 7, 중소기업은 100 분의 12)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

	<u>으로 한다.</u>
	가)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
	<u>자하는 경우: 100분의 3</u>
	(중견기업은 100분의 8,
	중소기업은 100분의 14)
	에 상당하는 금액
	나)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
	설에 투자하는 경우: 제
	2호가목2)에 따른 금액
나 <u>2023년 12</u>	나 <u>2023년 12</u>
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	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
<u> </u>	도부터 2025년 12월 31일
	이 속하는 과세연도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